

중개기관-수요기업 제조매칭을 통한 B2B제조거래활성화사업 추진 안내

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중개기관-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제조매칭 및 제조 거래 활성화를 위해 『2025년 B2B제조거래 활성화사업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□ 지원목적

- 제품양산 목적을 가진 수요기업과 생산능력을 갖춘 공급기업 간에 중개기관의 매칭을 통한 제조거래활성화 및 산단 내 제조기업 일감 확보 지원
- 온라인B2B제조거래를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DX, AX 촉진
 - * 수요 또는 공급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어야 함

□ 지원대상

- 사업 목적에 맞는 산단 내외 중소·중견기업
 - * 중개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된 과제 지원

□ 지원내용

- B2B제조서비스 : 지원분야 중 1개의 과제 선택 또는 패키지 형태로 신청 가능
 - * 지원금액 및 비율은 중개기관과 협의 후 진행

- 1) 제품설계 : 양산 과정에 필요한 제품설계 지원
 - 지원금액 : 최대 3백만원 이내
- 2) 시제품제작 : 제품 도면을 보유하고, 시제품 제작에 대한 재료비·외주가공비 등의 비용 지원
 - 지원금액 : 최대 15백만원 이내
- 3) 시험분석·인증 : 국내외 규격인증을 위한 시험·분석과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지원금액 : 국내 시험·분석의 경우 3백만원, 국외 5백만원/국내 규격인증의 경우 5백만원, 국외 7백만원 이내
- 4) 공정효율개선 :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제조SW 활용 지원
 - 지원금액 : 최대 15백만원 이내
- 5) 제조AI 지원 : AI솔루션을 활용한 제조 데이터 분석 지원
 - 지원금액 : 최대 15백만원 이내

□ 신청방법

- 지정된 중개기관(10개 기관)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며, 중개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과제만 신청

(가나다 순)

중개기관명	담당자	연락처	소재지	중점분야
경북산학융합원	전찬영 주임	054-478-6955	경북 구미	방위산업, 반도체
고스디자인	김재순 부대표	070-4788-7279	경기 성남	소형가전, IT의료기기
광주산학융합원	유승혁 팀장	062-940-9123	광주	모빌리티, 스마트가전, 생체의료, AI 융합제품
볼트앤너트	윤기열 대표	010-2874-1248	서울	금형사출, IoT제품, 금속/플라스틱 가공품
셀센코리아	양단열 대표	070-8804-6080	대전	소형가전, 생활용품, 의료기기, 대형장비
아이디어오디션	김계은 차장	070-4153-3710	서울	생활용품, 소형가전, 제품개발
에이팀벤처스	고유미 팀장	010-4669-6322	서울	제품개발, 부품제조, 완제품위탁생산, 공장자동화SW
엠브이에이	장형윤 이사	070-8064-1042	서울	소형가전
크렐로	최지욱 팀장	02-565-7074	서울	하우징 부품, 전자기기 내부 부품
팩토리풀	이현규 대표	051-935-1070	부산	해양장비, IoT, 케이스

- ① 스마트K팩토리* 내 제조요청 등록 및 중개기관 선택 후 협의

* 한국산업단지공단 B2B제조거래플랫폼(kicox.or.kr/kfactory/)

- ② 중개기관 직접 연락 및 협의

□ 유의사항

□ 중개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

- 본 사업은 중개기관*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신청 및 추진 과정은 선정된 중개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함.
* 중개기관 : 수요-공급기업 매칭 및 B2B제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
- 중개기관과 협의에 따라 B2B제조서비스의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.

□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

- 사업으로 확보되는 데이터에 대해 전담기관 및 중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함.
-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시스템(스마트K팩토리)에 데이터 의무 제공 등
-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(B2B제조서비스 추진 증빙 등) 및 실적(계약, 매출 실적 등)에 대해 중개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임한다.

□ 만족도 조사

- 제조매칭 및 B2B제조서비스 수행 후,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중개기관의 평가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
□ 협약위반 대한 조치

- 지원받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확인되거나, 협약을 위반 및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특별평가위원회 및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(행·재정 제재 포함) 및 사업비 환수가 가능하며, 사업종료 후 발견된 경우에도 관련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□ 비밀보장의 의무

-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전담기관 및 중개기관과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